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

**School Name**

**School Address**

**학생 주택 설문지**

다음 질문에 답변하시면 이 학생이 McKinney-Vento Act 42 U.S.C. 11435에 따라 이용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McKinney-Vento Act는 주거지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자세한 정보는 뒷면을 확인해주십시오)

**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**

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. (District Homeless Liaison (지역 홈리스 담당자)에게 제출하십시오. 연락처는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).

모텔  차량, 공원, 캠프장, 기타 유사 장소

쉼터  임시 주거시설

장소를 옮겨다님/카우치서핑  기타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파트에 다른 가족과 거주

부적절한 시설에 거주 (수도, 난방, 전기 등을 이용할 수 없음)

학생 이름:  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이름 중간이름 성

학교 이름: 학년: 생년월일 (월/일/년): \_\_ 연령: \_\_\_\_\_\_

성별:  학생 보호자가 없음 (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)

학생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함

현재 주거지 주소:

전화번호 또는 연락처: 담당자 이름: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부모/법적 보호자 이름 (인쇄체):

(또는 비동반 청소년)

\*부모/법적 보호자 서명: 날짜:

(또는 비동반 청소년)

\*본인은 워싱턴주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 처벌 조항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서합니다.

**작성된 서류 제출:**

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District Liaison(지역 담당자) 전화번호 위치

**학교 직원 전용:** 데이터 수집 및 학생 정보 시스템 코딩용

(N) 무주택자 아님  (A) 쉼터  (B) 더블 업  (C) 미보호  (D) 호텔/모텔

**McKinney-Vento Act 42 U.S.C. 11435**

### SEC. 725. 용어 정의

본 부제의 목적에 따라:

(1) “등록하다”와 “등록”은 수업에 출석하고 학교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
(2) 홈리스 아동 및 청소년은 -

(A)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을 뜻합니다 (섹션 103(a)(1)의 의미 내에서),

(B) 다음을 포함합니다.

(i) 집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집을 나눠 쓰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; 적당한 대체 숙소가 없어서 모텔, 호텔, 트레일러 파크, 또는 야영장에서 살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; 병원에 버려진 아동 및 청소년; 가정위탁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;

(ii) 사람을 위한 정기적인 취침 숙소로 지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평상 시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 또는 민간 장소를 일차 야간 거주지로 사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 (103(a)(2)(C)항의 의미 안에서);

(iii) 자동차, 공원, 공공 장소, 폐건물, 표준 이하의 주택, 버스 정거장이나 열차역, 또는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; 그리고

(iv) 아동이 (i)조 ~ (iii)조에 설명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제 하에서 홈리스의 자격을 충족하는 이주 아동 (이 용어의 의미는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1309항에 정의되어 있음)."

(6) 용어 “비동반 청소년”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."

**추가 자료**

부모 정보 및 자료는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National Center for Homeless Education](https://nche.ed.gov/)

[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Homeless Children and Youth](http://naehcy.org/educational-resources/)